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특례규정 신설〉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70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문정복 · 이개호 · 정준호 · 김문수 · 안도걸

최혁진 · 이성윤 · 조계원 · 박지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 의안번호 : 1327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 중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이하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최초 심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1차 연장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각 단축하고,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에 따른 청원 심사기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민동의 입법청원	기타 청원
위원회 심사기간	90일	60일	현행과 같음
1차 연장	60일	30일	현행과 같음
추가 연장	가능	가능	현행과 같음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u>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u>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 ----- ----- -----. <u>1.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u> <u>2.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청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신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

① 제1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일 것

2.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을 첨부할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 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¹⁾

또한,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림-1] 국회의 청원 심사기간



그런데, 현행법상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과 ‘특별한 사유’ 등 심사기간 연장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1)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2022. 8.), p.3

KBS, “유명무실 ‘국민청원제’…심사 않고 무기한 방치”, 2024. 6. 1.

내일신문, “청원 82% ‘폐기’ 임박…제도 한계 악용해 ‘무기한 심사’”, 2024. 4. 23. 등

실제로 제18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의 약 79%가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다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83%의 청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파악됨.

[표-3] 제18대 ~ 제22대 국회 청원 접수·처리 현황

(2025. 11. 6.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리	처리율	계류	임기만료폐기
제18대	의원소개청원	272	69	25.4%	-	203
제19대	의원소개청원	227	50	22%	-	177
제20대	의원소개청원	200	39	19.5%	-	161
	국민동의청원 ⁴⁾	7	2	28.6%	-	5
	합 계	207	41	19.8%	-	166
제21대	의원소개청원	84	22	26.2%	-	62
	국민동의청원	110	11	10%	-	99
	합 계	194	33	17%	-	161
제22대	의원소개청원	32	2	6.3%	30	-
	국민동의청원	211	4	1.9%	207	-
	합 계	243	6	2.5%	237	-

이에 개정안은 국민동의 입법청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단기의 심사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국민동의 입법청원의 최초 심사기간과 1차 연장기간을 단축하여 국회의 신속한 청원심사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요구가 가능한

4)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됨.

헌법 제125조제6항이 그대로 적용⁵⁾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국민동의 입법청원에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헌법⁶⁾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은 청원의 제출 방식(국민동의 또는 의원소개)이나 유형⁷⁾(입법, 행정, 보상 등)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소개청원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5조(청원서의 제출) ⑥ 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6)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7)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을 그 내용에 따라 ① 입법(제정·개정·폐지 등), ② 행정(시정·지원·단속·처벌 등), ③ 보상(토지수용·가옥철거 등), ④ 인허(허가·인가·면허 등), ⑤ 조세(세금·공과금·수수료 등), ⑥ 기타(노사분쟁·재심 등)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